대법원 2024도33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 1이 검사로 재직할 때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퇴직 후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보관하다가 친구인 변호사 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30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인 1: 전 검사·변호사
- 피고인 2: 피고인 1과 친구, 변호사
- A: 피고인 2의 의뢰인으로서 피고인 1, 2에 대한 고발인

나. 공소사실의 요지1) ➡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¹⁾ 원심에서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2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생략함

■ 피고인 1

- 피고인 1은 검사로 재직하던 2014. 11.경 구속영장청구의견서(다수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등 기재)를 작성하고, 2015. 2.경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도 이를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계속 보관함
- 피고인 1은 2015.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발 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피고인 2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 1부를 건네주 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

■ 피고인 2

●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 1부 를 건네받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 검사는 A로부터 A가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문서라고 주장하는 구속영 장청구의견서 사본을 전달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함
- 검사는 원심에서 공판카드에 첨부되어 있던 피고인 1 작성의 구속영장청 구의견서를 증거로 추가 제출함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들 무죄

● 검사가 A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 부 정

■ 원심 ➡ 피고인 1: 유죄(벌금 2,000만 원), 피고인 2: 검사 항소기각

- 검사가 A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 인 정 ⇒ 피고인 1 유죄
 -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문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② 문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

며, ❸ 증거로 제출된 문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건네받았는데, 피고인 2 가 현재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음(☜ ①, ② 요건)
- 검사는 원심에서 공판카드에 첨부되어 있던 피고인 1 작성의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구속영장청구의견서와 A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건네준 구속 영장청구의견서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됨(※ ② 요건)
- 피고인 2가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제공받을 당시의 영리 목적 부정 ⇒ 피고인 2 무죄
 -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2가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제공받은 이유는 사건 경과 및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음
 - 그 당시 피고인 2가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 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에서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피고인 2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에「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에서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관련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